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33회 임시회

검 토 보 고 서

2019. 9. 23.(월)

순서	검 토 안 건	제 안
1	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	채우진 의원 외 9명



행정건설위원회
(전문위원 유준상)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” 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유준상)

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- 제출자 : 채우진 의원 외 9명
- 제안일 : 2019. 9. 17.
- 회부일 : 2019. 9. 17. (의안번호 : 19 - 132)

2. 제안이유

-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재활용 촉진하기 위한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구청장,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(안 제2조 ~ 안 제4조)
- 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(안 제5조)
- 의류수거함 운영·관리 등(안 제6조)
- 의류수거함 운영·관리자 업무 등(안 제7조)
- 의류수거함 운영·관리자 준수사항(안 제8조)
- 의류수거함 강제철거 등(안 제9조)

4. 관계법령

-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3항

5. 참고사항

- 국민권익위원회, 2016. 7. 25.
 -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 방안 권고
 -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의류수거함 설치·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권고
 - 국민신문고에 의류수거함 관련 고충민원이 제기되고 있음.

○ 헌옷수거함 동별 수량

계	공덕	아현	도화	용강	대흥	염리	신수	서강	서교	합정	망원 1	망원 2	연남	성산 1	성산 2	상암
452	36	0	13	3	23	0	46	43	30	68	36	22	28	49	47	8

6. 검토보고

- 본 제정조례안은 채우진 의원 외 9인에 의해 발의되어 행정건설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3항에 위임된 사항과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재활용 촉진을 권장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.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헌옷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구청장, 사업자,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,

- 안 제5조에서는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의류수거함의 규격·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규정하였고,
- 안 제6조에서는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·관리자 지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
-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헌옷 재활용에 대한 수집·운반·처리 등과 의류수거함 설치로 인한 차량의 통행 및 구민불편 사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류수거함 운영·관리자의 업무 및 준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,
- 안 제9조에서는 불법 의류수거함 등에 대한 강제철거 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음.

○ 검토의견으로는

본 제정조례안은 서울 2곳 지방 14곳이 조례로 제정되어 관리운영하고 있으며, 의류수거함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보행자 및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고 관리등이 소홀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,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- 집행부가 올 초부터 의류수거함에 대한 관리 상태를 개선하고자 타 자치구 벤치마킹, 수거함 관리업체 면담을 통한 정비 및 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될 것으로 보이며, 의류수거함 제작을 할 경우 단순 의류

수거함을 넘어 디자인을 개선하고 의류수거함이 골목구석에 있는 점을 활용한 치안 벨을 부착하는 등 멀티기능 수행이 가능한 수거함으로 변화 되도록 타 자치구의 의류수거함 형태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.